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9 선고 2021가단698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윤일주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09,22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판결에 따른 각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순번	사건번호	양수금 채권액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330733호	25,681,650원 및 지연손해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66414호	22,762,653원 및 지연손해금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07542호	12,003,353원 및 지연손해금

나. 피고는 B의 형제로서, 부 C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1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3.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B의 다른 채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20. 3. 4. 이 법원 2020가단65374호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8. 위 법원은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923,2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33,923,2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809,224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5,809,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D이 제기한 선행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D에 판결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행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인데,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 확정판결에서 별도의 시가 감정없이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33,923,294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는 D으로부터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33,923,294원 중 일부금액을 조정받아 29,889,123원을 변제함으로서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사자의 다툼 없는 사실로 정해진 시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점,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경우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가액배상금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여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D이 판결원리금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피고로부터 변제받음으로써 판결원리금 전액을 변제받는 것도 허용되며 이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에게 다시 중복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D이 피고에게 그 지급을 면제해 준 3,404,171원(33,923,294원-29,889,123원)의 범위에서라도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와 통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가 D에만 가액배상금을 지급함으로서 D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D이 선행 확정판결 이후 그 집행과정에서 피고에게 가액배상금의 일부를 면제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피고가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것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어서

면제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별 지 목 록

1. 경기도 양평군 E

대 423㎡

2. 경기도 양평군 F

대 512㎡

3. 경기도 양평군 F, E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평군 G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주봉 주택 131.97㎡

- 이상 -

